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물질명 : 프탈산 디옥틸 (Dioctyl Phthalat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공급자 정보

공급자 : OCI주식회사

공급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소공동) TEL : 02 - 727 - 9494

담당부서 : PEROXIDE/SC사업팀

2. 유해성 · 위험성

- 1) 유해성 · 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4
 발암성 : 구분2
 생식독성 : 구분1B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 위험문구

위험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1 분진 · 흡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 · 보호의 · 보안경 ·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십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십시오.
저장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3)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 위험성(NFPA)	
보건	0
화재	1
반응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프탈산 디옥틸 (Dioctyl Phthalate)
이명(관용명)	BIS(2-ETHYLHEXYL)PHTHALATE
CAS 번호	117-81-7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1)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십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 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십시오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십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십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 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십시오
3)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4)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십시오.
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십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1)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3)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십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하십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십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십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십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십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누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도다니지 마십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십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십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십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옆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십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십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십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십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십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 1)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 2)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 |
|-----------|---|
| 국내규정 | TWA 5 mg/m ³ STEL 10 mg/m ³ |
| ACGIH 규정 | TWA 5 mg/m ³ |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
- 2)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3) 개인보호구
- | | |
|--------|--|
|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250mg/m ³ 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호흡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mg/m ³ 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0mg/m ³ 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mg/m ³ 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mg/m ³ 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호흡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 눈 보호 |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 손 보호 |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
| 신체 보호 |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에서 연한색
냄새	매우 약한 냄새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55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85 °C
인화점	215 °C
증발속도	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0.3 % (245°C)
증기압	1.42X10 ⁻⁷ mmHg (25°C)
용해도	2.70X10 ⁻¹ mg/ℓ (25°C)
증기밀도	16
비중	0.981 (25°C)
n-옥탄올/물분배계수	7.6
자연발화온도	390 °C
분해온도	-352X10 ⁺⁵ (J/KG)
점도	22 cSt (20°C)
분자량	390.56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 |
|-------------------------|---|
| 1)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
| 2) 피해야 할 조건 | 열 |
| 3) 피해야 할 물질 | 자료없음 |
| 4)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자극성, 독성 가스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
|-------------------------|---|
| 1)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극, 기침, 구역, 조정(기능)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음.
구역, 설사, 위통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2)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30000 mg/kg Rat
경피	LD50 25000 mg/kg Rabbit
흡입	미스트 LC50 >10.62 mg/ℓ Rat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약한자극(500mg, 24시간, rabbit)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2
IARC	2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R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독성

어류	EHCA LC50 >0.32 mg/ℓ 96 hr 기타 (rainbow trout, 유수식 (OECD TG 203, GLP))
갑각류	EHCA EC50 >0.003 mg/ℓ 48 hr Daphnia magna(지수식(OECD TG 202))
조류	EHCA EC50 7582 mg/ℓ ~ 397 mg/ℓ 7 day Scenedesmus subspicatus(유수식)

2)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3) 생물농축성

농축성	840
생분해성	62 (%) 28 day

4)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5)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방법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 처리하시오.

2)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 |
|--|---|
| 1) 유엔번호(UN No.) | 3082 |
| 2) 적정선적명 | 환경유해물질(액체)(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
| 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9 |
| 4) 용기등급 | III |
| 5) 해양오염물질 | 해당(MP) |
| 6)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
| 화재시 비상조치 | F-A |
| 유출시 비상조치 | S-F |

15. 법적 규제 현황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류 제4석유류 6000 ℓ |
|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국내규제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 국외규제 |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Repr. 1B |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60FD |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53, S45 |

16. 기타 참고자료

- 1) 자료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상품대사전 - 가나다화학,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2) 최초 작성일자 : 1996. 05. 02.

3)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개정 번호 : 12

최종개정일자 : 2017. 08. 01

제공된 정보는 제품에 대한 현상태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명세에 따르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배합 및 혼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 개인 위생, 인류 복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행정, 규제 절차를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